

#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성 명 :  
생 월 일 : 월 일

- 「수원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구분	결격사유	해당여부(O/X)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본인은 (재)수원시정연구원 직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지 원 자 : (인)

(재)수원시정연구원장 귀하

\* 수원시정연구원 직원 채용 절차상 요구되는 결격사유 조회용으로만 사용됩니다.